

■ 공무원임용시험령 [별표 4의2] <개정 2026. 6. 30.>

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
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(제7조제1항 관련)

대상 시험	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•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	•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(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)의 제1차시험 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•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
과목	• 언어논리영역 • 자료해석영역 • 상황판단영역 • 헌법	• 언어논리영역 • 자료해석영역 • 상황판단영역
대체하는 시험의 종류	공직적격성평가(심화)	공직적격성평가(기본)

비고

1.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시험 원서접수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원서접수 연도의 다음연도에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.